취득 성적 포기 안내

1. 근거

가. 학칙 제4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나. 학사운영규정 제10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2. 내용

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**C+등급 이하의 경우 성적을 포기**할 수 있는 제도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했거나 초과 취득 예정인 경우

3. 신청대상자 : 2024년 전기(2월) 졸업예정자

4. 신청 시기

이수학기	시기	포기신청학점	비고
7학기	학기 초	6학점 이내	1회 신청 시 6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졸업까지 **총 12학점 이내에서 가능**
8학기	학기 초	6학점 이내	
	졸업 마지막 학기 성적 확인 후	**6학점 이내**	

5. 신청방법(☏ 043-830-8584, M동 411호)

구분	절차	일정	제출서류
1. 작성	취득성적 포기원 및 서약서 작성 및 서명	2024. 01. 08. ~ 01. 15.	① 취득성적 포기원 ② 서약서 ③ 성적증명서
2. 제출	학생 → 소속 학과(부)장		
3. 검토	소속 학과(부)장 학생상담 및 지도		
4. 확인	소속 학과(부)장 확인 후 서명		
5. 학생원스톱센터로 제출	학생 → 학생원스톱센터		

6. 주의사항

가. 교필 및 전필 교과목은 취득 성적 포기 불가

나. 취득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인정받을 수 없음